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488호

'17년 하반기 항공직렬 경력경쟁채용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2017년도 하반기 항공직렬 (항공8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직렬별 채용예정 인원 : 총 38명

채용예정 직렬·직급	채용예정 직류	선발예정 인원	모집단위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	임용 예정일
항공 8급	관제	34명	서울지방항공청	16명	'18년초
			항공교통본부	18명	
	정비	2명	서울지방항공청	2명	
	조종	2명	부산지방항공청	2명	

* 금번 채용은 모집단위별로 접수하여 경력경쟁채용 진행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직류	주요 담당 업무
관제	·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정비	·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
조종	· 비행계획서 접수, 운항자격심사 일정 수립 등 항공정보 업무

3. 근거 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17.7.26.)
-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17.7.26.)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17.1.10.)
-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제44호, '17.8.22)

4. 응시 자격 (응시자격 인정기준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개별요건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개별 요건
항공 (관제)	항공서기 (8급)	< 자격증 요건 >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항공 (정비)		< 자격증 요건 >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항공 (조종)		< 자격증 요건 >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다. 기타 응시조건

○ 자격증(면허증), 증명서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할 것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등의 소지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담함

○ 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 증명서의 **동일 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소지시 **응시자격**이 있음

○ **거주지**에 대한 **제한 없음**

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시험과목 : 항공법규, 영어 2과목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항공 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이상 4개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등 중점 출제

* 항공법 분법 시행에 따라 필기시험 과목 변경사항 사전 공고('17.8.8)

○ **영어**(80問, 객관식)

- TOEIC, TEPS, 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어휘 등)

나. 필기시험 합격자 수

○ **모집단위별**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

다.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 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 기준은 응시자격, 응시연령, 복수국적자 여부, 병역사항 등을 심사하되, **미비한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전일**까지 **보완** 가능

- 다만, 응시자격과 관련된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등은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인정**

* **서류전형 예정일 : '17. 12. 1(금)**, 서류전형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

라. 면접시험

○ **모집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하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채용 공고	원서 접수	필기 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서류 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10.24(화)	10.27(금) ~11.8(수)	11.18(토)	11.29(수)	12.1(금)	12.6(수)	12.16(토)	12.29(금)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 정보)에 게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세부 일정·장소는 추후 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필기시험 : **'17. 11. 18(토)** * 응시자는 오전 9:00까지 입실 완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7. 11. 29(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7. 12. 6(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면접시험 일시·장소 : **'17. 12. 16(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 면접일시·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최종 확정하여 공고할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 및 시간 : **'17. 10. 27(금) ~ '17. 11. 8(수)**, 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접수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65)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되, 응시원서는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찾아오시는 곳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6-2동) 운영지원과(552호) 채용담당자

○ 교통편

- 오송역 하차 → 버스 : BRT 990번(정부세종청사북측)
  751번(세종청사 하차)
- 대전역 하차 → 버스 : BRT 1001번(정부세종청사북측)
  지하철(반석역) → BRT 990번(정부세종청사북측)
- 조치원역 하차 → 버스 : 601번, 602번(공정거래위 하차)
  550번, 551번(정부세종청사북측)

※ 자세한 대중교통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유의사항

○ 금번 채용은 **모집단위별로 진행**하며,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 응시원서에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 불가,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응시원서 **접수처**(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서 **교부하는 양식** 또는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수정 불가)

* 국토부 홈페이지(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서 응시원서를 저장 후 작성

- 응시수수료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이되, 필요시 **전자수입인지**도 가능(현금 접수 불가)

*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소정의 양식에 맞게 촬영된 **사진 2매** 부착(응시원서 2매)

②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되, 경력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본을 제출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⑤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사본** 1부

*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 증명서
  정비 : 항공정비사 자격증(舊 항공공장정비사)
  조종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⑥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한국사능력검정 3등급 이상 보유자 등 **가산특전 대상**일 경우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⑦ **전역예정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기타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금번 채용은 채용요건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대 상 자 >

◈ **아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ㅇ「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ㅇ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국사능력검정

○ **'13. 1. 1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급, 2급 : 5%, 3급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류**를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17. 11. 17(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이후**에 **가점 취득**이 **예상**될 경우에는 **응시원서 해당란**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시 : 한국사능력검정 2급 취득 예정('17. 11. 15)

10. 기타 참고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 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동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울러, **항공직 관제직류**는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시 **유효한 항공 신체검사증명서(3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4-201-3165(운영지원과 이찬희) // E-mail : chanah00@korea.kr

직 무 기 술 서

(항공8급 : 관제, 정비, 조종 직류)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주요업무	관제	○ 비행장, 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정비	○ 항공기 감항검사, 증명발급 및 감항기준 수립 등 항공정비업무
	조종	○ 비행계획서 접수, 운항자격심사 일정 수립 등 항공정보 업무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복의식)

필요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응시자격요건	관제 (자격증)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정비 (자격증)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자(舊 항공공장정비사 포함)
	조종 (자격증)	○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가산특전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과 한국사능력검정 가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별지서식 제1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7년 하반기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항공8급**	응시직류		
모집단위		생년월일		
전화번호		복수국적 여부		
주 소	(㉮)			
관련 자격증 (면허증), 증명서	종류 : (취득일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천원)
	종류 : (취득일 :)			
가산특전	종류 :			

※응시번호		**응 시 표** 2017년 하반기 항공직렬 경력경쟁채용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직류)	**항공8급** ( )			
모집단위				
성명(한글)		생년월일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 분실시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예정 1일 전까지 접수처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응시직급 : 기재하지 않음

□ **성명** : 한글로 기재

□ 응시직류 : 응시하고자 하는 직류 1개 기재(관제, 정비, 조종)

□ 모집단위 : 응시직류별로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 작성

ㅇ 관제 : 서울지방항공청 또는 항공교통본부

ㅇ 정비 : 서울지방항공청

ㅇ 조종 : 부산지방항공청

□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을 정확히 기재

* 응시표는 응시원서에 적힌 주소로 송부할 예정(등기 송부)

□ **생년월일** : **YYYY-MM-DD** 형태로 기재(예시 : 1982-01-12, 1995-12-01 등)

□ **전화번호** : 본인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 **관련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ㅇ 응시자격에 따른 관련 자격증(면허증), 증명서 등을 작성

* 응시자격에 따른 자격증 등을 취득할 예정일 경우에는 취득 예정일 표기

□ **가산특전**

ㅇ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및 한국사능력검정취득자는 해당 내용 작성

*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취득 예정자일 경우에는 취득 예정일 표기

□ **정부수입인지**

ㅇ 우체국에서 5천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전자수입인지로 구입하여 별도 붙임도 가능하되, 응시자 본인의 이름과 일치해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금번 채용은 채용요건인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

< 별지서식 제2호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류	항공8급 ( )	모집 단위		성명	

※ 응시번호 : 미기재 / 응시직류 : 괄호 안에 관제, 정비, 조종 중 1개 기입
모집단위 : 응시직류별로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 1개 기입

나.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별도 경력이 없을 경우 미기재

3. 가산특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월 일

성 명 : (인)

< 별지서식 제3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서 류
응시원서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국적정보
이 력 서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및 경력사항
기타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17년 하반기 기술직 경력경쟁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국적정보 포함), **입증서류 확인** 및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사진,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명, 경력, 국적정보, 성명, 생년월일, 기초수급 등 수상경력), **경력(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17년 하반기 기술직 경력경쟁채용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 . .

성명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